징계조치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 [1심]	사건유형	학교폭력
원 고	□□□	피 고	인천○○초등학교장
판결선고일	[1심]2019. 1. 31. 원고패소	비 고	
사건개요	❍ 인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7. 13.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가 2018. 7. 9. 13:07 ~ 13:15경 인천○○초등학교 내에서 4학년 학생인 ■■■에게 학교폭력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5시간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5시간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 등의 조치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게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5시간의 학생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전학의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이유	❍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가 과반수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선출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에 입후보한 학부모 수와 선출할 학부모대표위원 수가 동일한 경우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들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학부모들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입후보한 학부모를 학부모대표위원으로 선출하였다면 이와 같은 선출방법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등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짐과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하여 적절한 훈육과 선도를 통하여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교육적인 성격도 가지는		

	것인 만큼, 학교폭력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학교 측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갑 제4호증, 을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고 이 사건 고시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